

# 평가기획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의 평가에 관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평가기획 및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, 심의한다.

1. 본교의 평가 관련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본교의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각종 평가위원회(팀)의 제안 사항
4. 대학 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평가지원단장, 기획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지원단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평가지원단 직원이 된다.

**제4조 (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 (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**제6조 (심의 및 시행)**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투표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**제7조 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자필서명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주관부서)**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평가지원단에서 담당한다.

**제9조 (협조요구권)**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.

1. 업무 현황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
2.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에의 출석 및 의견 개진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비밀유지)**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평가기획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